2017 K-water 정보공개 매뉴얼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차 례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 5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5

2. 정보공개의 의의 ····· 5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5

4. 정보공개의 원칙 ····· 6

Ⅱ. 공공기관의 의무 ····· 9

Ⅲ. 정보의 공개청구 ····· 12

1. 정보공개 정보의 범위 ····· 13

2. 정보공개의 방법 ····· 13

3. 정보공개 청구권자 ····· 14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14

5.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 15

6. 정보공개청구 보완 · 취하 ····· 16

7. 정보공개 청구방법 ····· 17

Ⅳ. 정보공개 처리 ····· 17

1. 정보공개여부 결정 ····· 17

2.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19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20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20

5. 정보공개 실시 ····· 21

6. 정보부존재 처리 ····· 26
7. 진정·질의 처리 ····· 31
8.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32
9. 비용 부과·납부 ····· 33
10.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 35

Ⅴ. 불복구제 방법 ····· 36
1. 이의신청 ····· 36
2. 행정심판 ····· 38
3. 행정소송 ····· 38

Ⅵ.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 39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40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41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 43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43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45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48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50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52

Ⅴ. 정보의 유형별 공개 ····· 52
1. 법령 등에 관한 정보 ····· 52
2. 심의회, 위원회 및 기타 회의 등에 관한 정보 ····· 54
3. 인사 및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 55
4. 예산·결산·회계 관련 정보 ····· 57
5. 계약에 관한 정보 ····· 59

6. 국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 61
7. 행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 ····· 62
8. 연구성과 등에 관한 정보 ····· 63
9. 출입검사, 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정보 ····· 64
10. 지도·조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보 ····· 65
11. 인·허가에 관한 정보 ····· 67
12.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68
13. 융자 및 보조금에 관한 정보 ····· 69
14. 지급 및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정보 ····· 71
15. 대외관계에 관한 정보 ····· 72
16. 통계조사 등에 관한 정보 ····· 72
17. 고충·진정에 관한 정보 ····· 73
18. 불복신청, 소송에 관한 정보 ····· 74

Ⅵ.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76

Ⅶ. 사전 정보공개 ····· 77
1.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 77
2. 정보목록의 사전 공개 ····· 79

< 별 표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82
수수료 기준 ····· 104

< 별 지 >

각종 서식 ····· 106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정보공개』의 정의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표기

2.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임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및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정에 대한 신뢰제고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결정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4. 정보공개의 원칙

□ 공개의 원칙 및 판단기준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

● 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

□ 예외적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아래의 범위에서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수립·공개 하여야 함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공개법 제4조)

●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으로서 적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확정일자), 건축법(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법(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 정보공개법의 적용 유의사항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며, 정보공개·비공개는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여부로만 결정

●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민원으로 안내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VS 제9조 제1항 제1호 비교

구 분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도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규정내용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	정보 비공개결정의 사유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 공공기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민사집행법 제72조 등 -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국가정보원법 제6조, 제12조 등
효 력	-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정보의 발급·열람 등 가능	- 정보공개법 적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 사유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비공개 결정

Ⅱ. 공공기관의 의무

□ 정보공개 원칙 (정보공개법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존중 의무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2항)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 정비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 정비
●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

□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정보공개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 정보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공개대상 정보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 융자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정보공개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목록을 제공

- 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나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정보공개법 제8조의2)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

< 작성단위 >

- 직제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 작성방법 >

- 작성단위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 작성단위별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할 경우 작성단위별 조정

<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최신판계의 인용,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경우 신속·재분류
- 직제규정 등으로 소관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보완·공개

□ 정보공개 청구내용의 확인 및 안내

● 불필요한 청구의 방지 및 이의신청의 사전예방 노력

- 정보공개 접수담당직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사전공표 및 정보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 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등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함

●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개청구자에게 있음
-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비공개로 인한 국민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 정도를 비교하여 공공기관이 결정

Ⅲ. 정보의 공개청구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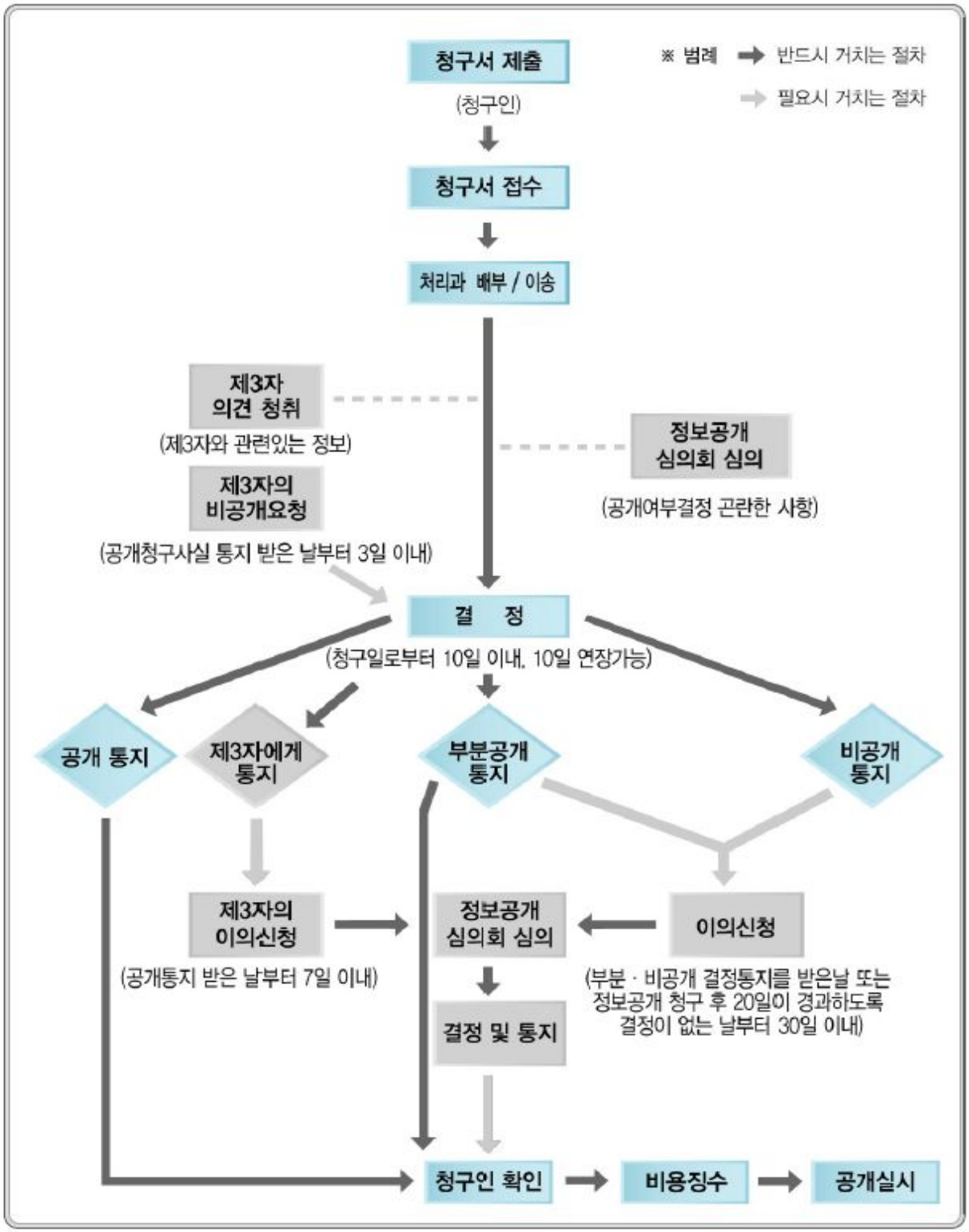

1.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
-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의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자료로서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자료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경우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2. 정보공개의 방법

-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URL) 안내

* 공개할 때 본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본·복제물·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가능

3.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제출,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제출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법인 또는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 말로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 직원의 앞에서 진술
- 담당직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5.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발급 생략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 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 소관부서 분류

-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로 분류
-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부서 또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소관 기관 이송

- 접수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 방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우선 처리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 잘된 사례 >

○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업무를 시행한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정보는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귀하께서 청구한 정보는 검사기관인 △△기관에 이송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사례 >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시 △구청에서 보유·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구청에서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 주관자료이므로 △△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하신 정보는 △△시 소관업무입니다. △△시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의 민원 처리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

6. 정보공개청구 보완·취하

□ 청구 서류의 보완·취하

● 해당 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음

● 접수한 청구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미 산입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그 처리기간에 미 산입

● 청구 서류의 취하는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

-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접수 후 처리

* 구두신청에 의한 취하 처리시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취하원 양식은 따로 없으며 취하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됨

7.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온라인 청구

-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 또는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열린경영-정보공개/공표

● 서면 청구 <별지 서식 제1호. 정보공개청구서 활용>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 우편으로 발송
- 팩스 청구 : 청구서를 서면 작성, 팩스로 전송

* 청구대상 사무소 또는 본사 총괄부서에서 접수 가능

● 방문 청구 <별지 서식 제1호 또는 제2호 활용>

- 직접 청구 : 해당 사무소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 해당 사무소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Ⅳ. 정보공개 처리

1. 정보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공개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 한도는 저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 신청의 경우 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처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가능 연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의 경우

□ 결정기간의 기산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준용

-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2. 제3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기관은 필요할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 청구 사실 통지
  - 접수번호, 일자,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3의 서식)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 없음

□ 필요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

●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3자는 의결 제출을 문서로 하여야 함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음
-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기관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 통지(별지 제11호의2 서식)

* 정보공개 결정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 하여서는 안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3.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공개 여부의 결정은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

4.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결정통지 (처리부서)

- 공개(부분) 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부분공개는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 안내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절차

□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

-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 청구인 및 제3자에게 통지

  *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1호의2 서식]

-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부분(비)공개 결정

● 부분(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부분(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개별법령의 조항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

  * 단순 법조문 명시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5. 정보공개 실시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방법

- 열람 또는 사본,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정보통신망,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비용 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공개결정

□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한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경우는 제외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 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정보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허락하에 공개방법 변경 가능
-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
    *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 청구인에게 정확한 정보목록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청구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 결정통지서에 예상 수수료를 산출한 금액을 통지(사전 고지)하고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납부를 확인한 후 사본교부 및 열람 등 정보공개 처리절차 진행
-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등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로 볼 수 없음
- 열람의 제공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의 제공

- 기관은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할 수 있음
- 열람은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제공과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의 전자적 공개

-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이나 매체에 저장·제공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CSD파일로 변환되어 제공된 정보를 청구인이 엑셀 형식 등으로 개인메일을 통해 받고자 하는 경우, 관인 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 가능

□ 출력물의 진본성 확인 여부

● 공개된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되기 때문에 '간인'이나 '원본대조필' 표시를 따로 날인할 필요성과 의무는 없음

- 다만, 청구인이 소송자료 등 중요한 용도로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치 가능

● 담당 직원이 공개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

□ 대 상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처리방법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임의서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및 처리방법

- 정보공개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비공개, 공개)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함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

●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으므로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
-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로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 부분공개시 통지

●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관련 판례

● CCTV 영상 정보공개 가능 여부

* 정보주체 이외의 대상자(비공개정보)에 모자이크 처리 후 영상 압축 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2012두25729)

6. 정보부존재 처리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생산·접수'의 판단기준 >

- 기관의 정보목록 및 관련 시스템에서 청구 받은 정보의 검색 가능 여부
- 청구 정보가 관련 법령(직제), 업무 분장, 업무 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업무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정보의 생산·접수되는 시기 未도래의 경우
- 정보공개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 등이 요구되는 경우

☞ 기관의 '생산·접수'여부 판단 시 '상당한 개연성'여부로 판단

-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의 존부를 판단
  * 청구인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서제목, 번호, 작성일자, 등을 제시
  * '상당한 개연성'의 유무에 관해서는 당해 기관이 판례 등을 참고하여 청구 받은 정보와 기관 직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판단
- 청구인은 청구한 정보가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나, 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가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유의사항 >

○ 당해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당해 기관이 청구 받은 정보를 생산·접수하였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타 기관으로 모두 이관된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청구인이 대상기관을 이미 알고도 당해 기관에 청구하였거나, 이송대상 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이송처리 않고 기관 안내 후 정보부존재 처리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취합' 여부의 판단기준 >

- (기관 外)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제공할 의무는 없음
- (기관 內) 부서별 관리 정보인 경우 취합으로 볼 수 없음
  - 청구인은 공공기관 대상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고, 부서별로 정보가 나누어져있는 것은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취합'의 개념이 아님
  - 부서별로 특정 정보의 관리형태가 다를 경우 이를 청구인 요구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있는 그대로 취합·제공

< '가공' 여부의 판단기준 >

<table>
<tr><th>구 분</th><th>형태 변환</th><th>추 출</th><th>조 합</th></tr>
<tr><td rowspan="2">非 전자</td><td rowspan="2">전자적 형태로 변환
- 스캐너 이용(공개)
- 엑셀 등 변환(부존재)</td><td>(기존) 인허가 서류별 관리
→ 층수별, 회사별 통계</td><td>(기존) 日별 관리 정보
→ 年별 관리 정보</td></tr>
<tr><td colspan="2">(旣 관리방식과) 다른 기준으로 가공(부존재)</td></tr>
<tr><td>전자</td><td>非전자 형태로 변환(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無(부존재)</td><td colspan="2">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有(공개)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無(부존재)</td></tr>
</table>

< '형태 변환' 여부의 판단기준 >

- 非전자 형태(종이 등) → 전자적 형태
  - 非전자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가능
  - 非전자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제공은 가공
- 전자적 형태 → 非전자형태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시간적·경제적 부담 없이 변환 가능(정보공개)
    * 엑셀로 관리되는 정보는 원 데이터를 정렬, 삭제하여 공개 가능
    * 별도의 분석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적 정보를 非전자 정보로 변환 시 정보량이 많고 성질이 훼손되면 가공에 해당
    * 녹음파일 형태의 녹취록을 서면형식의 녹취록으로 요청한 경우는 가공

< '추출' 여부의 판단기준 >

● 非전자 정보의 '추출'

- 기관의 旣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 전자적 정보의 '추출'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추출'은 가공에 해당가능

< '조합' 여부의 판단기준 >

● 非전자 정보의 '조합'

- 기관의 旣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야 하는 경우는 가공에 해당

● 전자적 정보를 '조합'

- 별도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정보의 '조합'은 가공

< 유의사항 >

○ 공공기관이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업무상황, 정보관리방식·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합·가공 여부 판단

○ 별도 취합·가공이 필요한 청구인 경우, 원 정보 그대로 공개가능

- 원본 공개가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청구인도 가공에 동의하면 제한적 가공 가능

○ 비공개 및 공개부분이 쉽게 분리되어 부분공개가 가능하면 가급적 공개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 '보존연한 경과' 및 '폐기'의 판단기준 >

● (보존연한 경과)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보존연한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보존연한 경과여부는 청구시점이 아닌 '공개를 결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

● (폐기) 청구 받은 정보가 실제 보유·관리 대상인지 여부

* 보존연한이 경과하여도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 정보부존재로 판단 불가

< 유의사항 >

○ 보존연한 內임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관ㄹ기하고 있지 못한 경우 확인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보부존재 처리

* 천재지변, 관공서 이전, 업무이관, 공무원 고의·과실 등으로 관리 소홀에 대하여 징계, 처벌, 국가배상청구 가능

○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된 정보의 경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송처리

- 정보의 폐기·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 등은 공공기관의 입증책임

○ 청구 받은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연한과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

<처리예시>

○ 귀하께서 청구하신 '02년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는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보존연한이 5년으로, '07년에 폐기하여 정보부존재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포괄적 청구'의 판단기준 >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

● 청구기간과 내용 등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정보부존재)

-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조직·프로그램 등에 걸쳐 있는 경우(정보부존재)

* '전년도 문화사업 계획관련 공문·예산 문서 일체'는 특정 부서나 사업에 한정되지 않음

-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정보부존재)

< 유의사항 >

○ 민원처리법 제22조에 따라 보완요청하고, 그 여부에 따라 처리

*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보완되지 않은 경우, 정보부존재 통지

○ 보완 요구는 접수 후 즉시 문서·말·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민원인 요구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관련판례>

○ 대한주택공사의 건설원가 및 관련자료 일체 (대법원 2007)

○ △협회와 관련하여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의 문건 (2005누 25082)

○ 정보가 분실된 경우 원본의 보관자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공개할 수 있는지? (서울행법 2006구합 16878)

정보부존재 처리절차

● 기관 내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 정보부존재를 처리하여 통일성 있고 객관적으로 정보부존재 판단·결정 도모

● 각 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 소관 하에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협조(내부결재)’를 반드시 거쳐서 정보부존재 처리

* 시행령 제6조 제4하에 따라 ‘정보부존재’통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상 정보부존재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부존재를 함께 청구한 경우

-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 상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정보 부존재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 아닌 ‘정보부존재’의 사실을 통보

* 예)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 중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며, ○○사업계획서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의 경과로 폐기하여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보부존재 처리기간

□ 청구일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공개·비공개 결정과 정보부존재가 함께 청구된 경우

-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정보부존재’사유를 기재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부존재 처리 방법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결정·통지

< 잘된 사례 >

○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우리기관에서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요청한 △△현황의 경우 우리부가 용도별 자료 구분을 시행하지 않아 자료 추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서류는 신청일('00.00.00)로부터 보존기한(00년)이 초과하여 우리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잘못된 사례 >

○ 요청하신 자료는 정보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일체의 사업비 내역서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된 문서는 부존재함을 통보합니다.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한 자료를 확인 및 파악 해본 결과, 현재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진정·질의 처리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

●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시스템 상 통지로 갈음

* 처리기간 : 질의·상담·고충민원 7일 이내, 법령해석 14일 이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의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8.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확인

□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기타 외국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 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본인확인 정도를 달리 정해야 함
- 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9. 비용 부과·납부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용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기관이 부담

□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 기관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관의 장은 전자 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비용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이 부함되어야 함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감면비율은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 제외)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연구, 행정감시,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제출받아야함

□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시기

-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 수단
  - 수입인지, 부득이한 경우 현금 가능

□ 청구인이 비용 납부 후 해당 정보 공개

- 통지 후 청구인에게 해당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받은 후 공개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 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가능
- 수입인지·증지로 납부 받은 수수료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붙이고 소인 후 기관에서 보관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인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 수수료 산정 시 유의사항

- 하나의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수의 내용을 청구한 경우
  - 수수료 산정은 개별 건별로 수수료를 합산하는 대신 공개 결정된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

10.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 정보공개 오·남용 판단기준

-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 기관의 담당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동일·반복적 정보공개 청구

< 동일 정보공개의 청구 >

-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여 다시 공개하여도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청구
  - 동일의 기준은 사회 일반 통념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종전의 공개 내용과 유사성 및 관련성이 있어야 함
-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추가로 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종결처리하지 않고 공개사항은 공개 처리해야 함

< 반복 정보공개의 청구 >

- 정보공개 결정을 받은 자가 동일 내용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한 경우
  - 공개·부분·비공개 사유의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지 않은 청구인이 동일내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재청구에 해당 안 됨
    *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함
- 청구인이 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청구가 아님
- 동일 내용을 여러 사람이 하나의 기관에 청구하는 것은 반복청구가 아님

< 정당한 사유 기준 >

●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라 판단

-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
-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청구를 반복하는 것에 청구인의 사정이나 임의적 요구 등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경우 등

< 처리절차 >

● 내부결재 후 종결처리

* 고객포털 시스템/VOC-민원·정보공개-처리 메뉴에서 '종결처리' 기능 활용

Ⅴ. 불복구제 방법

1.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 제기권자

● 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

* 청구인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행정절차법의 도달주의 원칙에 따름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별지 제9호 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ㅌ오지

□ 이의신청의 결정 종류

●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인용으로 구분
*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2.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인, 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의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3. 행정소송

행정소송 (청구인, 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 가능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집행정지 신청 : 제3자가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야 함. 만약 공공기관이 제3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중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의 불복구제의 실익이 없어지게 됨

Ⅵ.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정보 판단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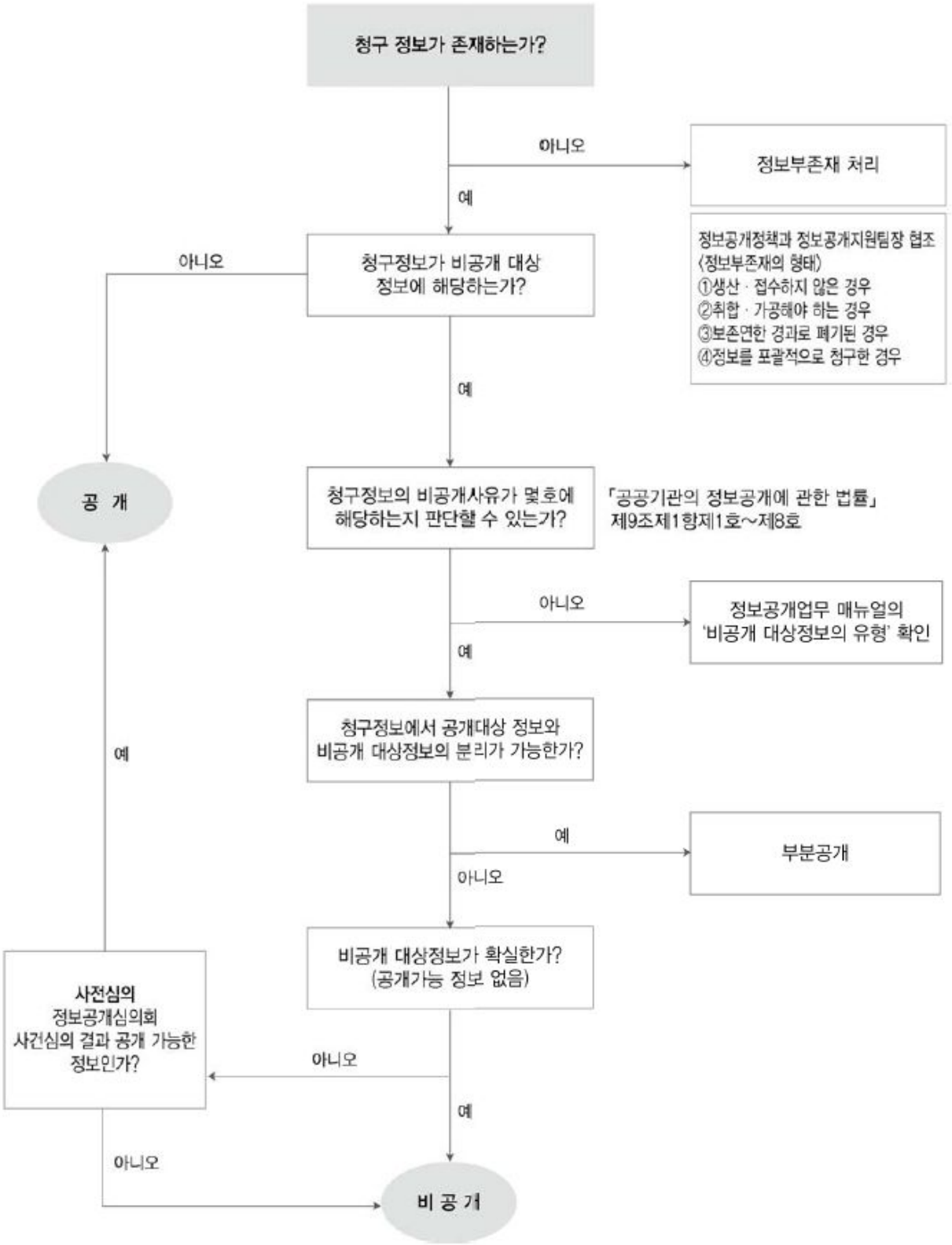

1.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입법취지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 내역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DB에 입력된 무역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보고, HIV 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 예산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 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이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입법취지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유형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
- 남북경제협력 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
- 외국 사법당국이 작성한 수사관련 자료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해당됨

□ 비공개 유형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무기·화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의 비공개는 한시적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입법취지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공개

시험 관련 정보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의 해당여부도 검토할 필요 있음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154] 또는 자유[155]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비공개
-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판단기준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 살이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볼 수 없음

-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

□ 비공개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 당해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특정 직원의 집 주소, 근무성적, 학력, 주민등록번호,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가능

● 담당직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담당직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직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가능

●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직무를 수행한 담당 직원의 성명·직위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입법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판단기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소정의 '영업 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협·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개연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비공개 유형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정보
  - 경영방침, 신용, 인사 등 사업활동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관련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8.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여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일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Ⅴ. 정보의 유형별 공개

1. 법령 등에 관한 정보

□ 법령, 고시 등

-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개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 협의·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해당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해 설

가.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말한다. 또한 고시란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 등 일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 알리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다. 국회제출 법률안 및 그 참고자료로서 이유,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조문은 정부의 의사결정시 의회, 국무회의 등에 제출되는 것이지만, 법률안 등의 공개시기에 대해서는 국회제출 후가 적당할 것이다.

나.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한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정보에는 관계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정보, 입안을 위한 조사에 관한 정보, 법령심사기관에 관한 설명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고 당해 입안사무 또는 법령개정 등 장래의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답변서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음에 열거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함

-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 권한의 행사 / 조세의 부과·징수
-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 섭외·교섭의 방침 또는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탈법행위의 조장, 법령위반 행위의 교모화·은폐를 초래하거나 교섭 등의 난항을 초래하는 등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의 인사사무, 시설관리 또는 사무의 진행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훈령·지침은 소관 사무에 관한 명령을 시달하기 위해 소속 기관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정 등을 명령·시달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각 공공기관의 지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의 법령질의 조회서·답변서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직무운영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령·지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2. 심의회, 위원회 및 기타 회의 등에 관한 정보

□ 심의회, 위원회 등에 관한 정보

●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개최현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건의 등은 공개대상 정보이나, 다음의 경우는 비공개 가능

- 자문·답신·건의·의사록 및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결의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정보
-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심의회, 위원회 등이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제의 기관을 말한다. 본 항목에서는 그 개최상황에 관한 문서, 자문, 답신·건의, 의사록, 회의제출 자료의 취급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심의회 등 위원명부에 대해서는 항목 3 인사관계 문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나. ⅰ)에 대해서는 심의회, 위원회 등으로서의 자주성, 자립을 배려한 것이며 ⅱ) 및 ⅲ)에 대해서는 의사운용규정 등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회, 위원회 등의 목적 및 임무에 비추어 동일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미 폐지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록의 취급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 다만, 심의회, 위원회에 있어서 의사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응하여 상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회, 위원회 등의 부회, 분과회, 소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그 성격·내용이 다양하여 본 항목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회의 등 관련 정보

● 법령, 법령에 근거한 훈령·지침, 국무회의 결정 또는 차관회의 등에 기초하여 개최된 회의, 협의회 등(당해 기관의 직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의 개최 취지, 구성원 또는 개최현황에 관한 정보 및 회의결과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

- 의사록 또는 회의제출 자료로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본 항목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회의는 법령 및 훈령 등에 근거한 대외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갖는 회의로서 복수 부처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에서 대상으로 하는 회의 이외에도 각 부처간의 사무담당자의 연락회의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의 회의 등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의에서 결정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의 내부 회의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본 항목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나. 회의에 관한 문서 중에서 개최취지, 구성원, 개최상황에 관한 정보 및 회의의 결정·합의는 공개 할 수 있다. 의사록 및 회의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비공개 할 수 있다.

3. 인사 및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나 다음은 공개 가능

-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결과
-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위원 명부
- 서훈, 포상 등의 수상자 명부

해 설

가.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의 ⅰ)~ⅲ)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성명·소속·직위 정도이다.

나. ⅰ)의 간부 직원의 인사이동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ⅱ)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의회와 같이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ⅲ)의 서훈 등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통상 명예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정보

- 직원의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연수실시 결과 개요 등은 공개 대상
- 공개함으로써 임면, 급여 등의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임의로 제공되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 등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
- 시험문제 및 그 작성요령, 시험의 채점, 합격·불합격의 기준 등으로 공개함으로써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에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연수실시 결과 개요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임의로 보고 등을 요구하는 문서는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로 인해 명확한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즉, 공개로 인해 정보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고, 따라서 이후의 정보수집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채용시험, 내부승진시험 등의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는 출제분야가 좁아 출제가 한정되는 시험문제, 시험문제의 작성 요령, 면접평가기준 등의 시험 채점기준, 합격·불합격의 기준,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감독의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시험 실시 요령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직원단체 등의 정보를 기록한 정보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는 협상 당사자로서 노동조합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해 설

직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방침, 교섭결과, 또는 직원단체 등의 요구서 등은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

- 자격시험 수험절차, 실무경험 심사기준 등의 시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
- 시험의 채점, 합격의 기준 등 공개함으로써 시험실시기관에 의한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자격시험의 수험자, 시험문제 작성자, 합격판정위원회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본 항목에는 전문적인 지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무 등에 관해서 당해 사무에의 종사, 관리감독자에의 취임 또는 일정 칭호를 인정하는 제도에 있어서 시험 및 대학 입학 자격 검정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출제분야가 협소하거나 실기시험장 시설·설비에 제약이 있어 출제가 한정되어 그 공개가 시험실시기관 등의 판정·평가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시험의 채점기준, 합격·불합격의 기준과 함께 시험문제가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시험문제의 작성요령이나 시험문제의 관리, 시험감독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실시의 요령에 대해서도 시험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수험자, 시험문제 작성자, 합격·불합격 판정 위원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합격자의 명단은 통상 게시판 등에 공개되지만 대학입학 자격 검정 합격자 명단 등의 경우와 같이 합격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4. 예산·결산·회계 관련 정보

□ 예 산

- 예산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나 예산의 내용에 관한 그 외의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예산작성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정보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세입·세출 등의 잠정계산의 결정은 공개가 원칙이나 세입·세출 등의 견적의 협의, 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잠정계산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본 항목은 국가의 금전에 의한 수지의 예정계획으로서의 예산, 예산작성을 위한 세입·세출 등의 견적, 예산의 실행결과로서의 결산, 수입지출의 관리절차 작용으로서의 회계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현행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참고를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에 관한 그 외의 문서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작성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지급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결 산

- 결산서, 결산관련 문서, 감사원의 검사보고에 관한 설명서는 공개
- 회계검사를 위해 제출/취득한 것으로 공개되는 경우 감사원의 적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결산은 일회계년도 간의 세입세출의 결정적 계산이며 예산집행이 완결되고 회계검사원의 검사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나. 결산에 관한 정보 중에서 검사과정에 있어서 감사원의 질문·확인, 피검사자측의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개선방안의 검토, 지도 또는 검사보고작성의 자료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면 검사과정에서의 검사내용이나 피검사인측의 대응에 대해서 일반적인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감사원은 문서에 의한 질문을 행하는 것이 곤란한 피검사인측과의 정보교류의 중요한 수단을 잃고, 공정하고 적정한 검사활동을 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피검사자측에서도 자주적인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공개로 인해 감사원의 적정한 사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회 계

- 세입의 징수·수납, 지출부담행위, 지급 및 세출 관련 정보는 공개
- 수입·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을 기재한 문서,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로서 다음의 정보는 비공개 가능

- 공개함으로써 범죄수사 등의 정보수집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예정가격, 예정가격에 추측되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금의 운영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i), ii)에 대해서는 수사비, 마약거래 활동비, 국방조사 위탁비, 보상비 등과 예정 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은 사무의 성격상 지출의 구체적 대상,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한다면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iii)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자금의 구체적 운용처, 방법을 공개하면 시장 등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할 수 있다.

5.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참가 절차·결과 관련 정보

- 입찰실시에 관한 공고사항,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참가의 절차·결과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참가자격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실시 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

해 설

입찰에 부치는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관보 등에 의해 공고), 입찰 결격사유, 경쟁계약 참가 자격요건, 업자선정 기준, 유자격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한다. 다만,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 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는 그 공개가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할 수 있다.

□ 예정가격 관련정보

-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산단가 등 공개함으로써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표준사양서 등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예정가격조서 등) 또는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정보(당해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단가 등)를 공개하는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예정가격을 추측 할 수 있는 정보는 동일한 관점에서 비공개 할 수 있다.

□ 체결과정·결과 관련 정보

- 계약방식, 입찰결과,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정보는 공개. 다음은 비공개 가능

- 설계·시공의 창의적 고안·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
-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시설설비의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취득 등의 교섭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교섭의 난항·지연,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를 초래하는 등 당해 또는 장래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계약방식 선정의 이유, 입찰계약의 경우의 입찰자명, 입찰가격, 낙찰자명, 낙찰가격 등 계약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정보 및 계약이행의 확인에 관한 규정·검사조사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ⅰ)~ⅲ)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6. 국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국유재산 현재액 구좌별 조서 등 국유재산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 보통재산의 대부, 매매와 지불 등의 보고서, 국유재산의 환경결정서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공개로 인해 처분 등의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공사업이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국유재산의 현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 중에 처분예정지의 평가액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정가격이 추측되는 등 입찰 등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국유재산관련법령(국유재산법 제69조 제4항, 제5조 제 1항)

나. 계약서 등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법인 등의 이용계획, 자금계획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관리부 등 물품관리의 현황에 관한 문서와 함께 물품관리계획, 물품수령서, 물품의 망실, 손상 등의 보고 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예정가격, 구입예정단위가 추측될 수 있는 것 등 공개로 인해 물품관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7. 행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 국가의 행정기관이 수립한 행정운영에 관한 중장기의 기본적인 계획, 목표, 방침 및 목표달성 상황 등 행정계획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개개의 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해 임의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행정계획"이란 대상기간이 중장기(3~5년 이상)이고 국가의 행정시책의 기본에 관한 것을 말하며, 대상지역의 범위는 반드시 전국적인 수준일 필요는 없다. 행정계획은 국가 행정의 기본에 관한 것이며, 행정계획의 원활하고 적정한 수행에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행정계획관계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개 노력이 필요하다.

나. 행정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달성상황 등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행정계획 중의 개개의 사무사업의 실시상황을 기록한 정보로서 그 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임의적인 협조 하에서 제공되고 있고,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제공자에게 지장이 초래되는 등으로 인해 이후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 계획 확정 과정에 관한 정보

- 행정계획의 확정시 사용된 통계자료, 행정계획의 확정을 위해 실시된 조사 연구의 결과 등 당해 행정계획의 확정 과정에 관한 정보는 공개, 다음사항은 비공개 가능

- 조사연구의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해당 행정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계자의 의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조사에 협조를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행정계획의 확정시 사용된 통계자료'란 수립한 행정계획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조사연구의 결과'란 당해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것을 말하고 행정기관 스스로가 행한 것 외에 외부위탁에 의한 조사연구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의 조사연구의 결과와 같이 당해 행정계획의 수립을 위해 특별히 정리한 것이 아닌 정보는 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ⅰ)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는 계획획정을 위해 자유로운 검토·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적정한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장래 동종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현재 수립된 행정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와 같은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계획수립 후에도 공개로 인해 행정계획의 실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행정계획 전체를 실시하는데 적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관계자의 의견조사'는 행정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중요한 검토·판단자료가 되는 정보로 공개로 인해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8. 연구성과 등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연구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공개가 원칙이나 다음은 비공개 가능

-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로 인해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심사, 검정, 인정 등 적격성·적합성 판단 등의 판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정보, 교정시설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본 항목은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행하고 있는 연구나 일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탁연구, 학계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연구나 부처 내 TF에 의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연구'란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론을 세우고, 신지식을 얻거나 기존 지식을 이용하여 개발하는 지적,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실태 파악이나 분석·정리에 그치는 조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연구자가 발표하기 전의 연구 테마, 내용, 성과 등 공개로 인해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저작권(공표권, 복제권) 또는 공업소유권 등(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노하우 등)을 취득하는 지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 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마. 일정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판정·평가의 방법, 희소 동식물의 서식지 등 공개로 인해 행정사무의 목적, 효과를 훼손하고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바.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서 행해지는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

9. 출입검사, 조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정보

□ 출입검사, 단속 등에 관한 정보

-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등의 권한 행사 및 법령에 기초한 명령·금지의 기본적 방침과 그 결과의 개요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출입검사 등의 실시시기, 방법 등 미리 공개하기 곤란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
  - 대상자에게 알리는 출입검사의 목적과 실효를 해할 우려가 있는 출입검사 등에 대한 실시계획이나 실시 요령
  - 정보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미치거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출입검사 등에 관한 통보나 정보
  - 공개로 인해 대상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징수·수거 자료, 출입검사 등의 결과, 결과에 따른 요구 등에 관한 정보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사업소, 사무소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사무·사업의 적정을 기하고, 그 시정을 통해 적법, 적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적인 권한행사인 출입검사, 조사, 단속, 감사, 감찰 등 법령에 기한 일방적인 일정행위·수인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출입검사 등에 관한 정보 중에 개인, 법인 등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또한 행정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본방침 또는 결과의 개요는 공개 할 수 있다.

다. 비공개가 가능한 정보라도 개인이나 법인 등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및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 세수의 내역, 체납액, 조세의 상담실적 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
- 개별 납세자의 조세의 신고·납부, 결정, 불복신청, 체납처분에 관한 정보 또는 세무조사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공개로 인해 조세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세수의 내역, 세무조사 결과의 개요 등 조세의 부과·징수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 및 납세의 고지에 관한 문서, 납세자로부터 제공되는 금전의 수령에 관한 문서, 납세자가 체납한 경우에 강제징수에 관한 문서 등 납세자 개개인의 수입 등의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조사의 방법, 범위 등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0. 지도·조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보

□ 기술·경영 등의 지도·조언에 관한 정보

- 신청·요청에 응하여 행하는 기술·경영·훈련 등의 지도·조언 지침, 요청, 지도사항 등은 공개가 원칙

해 설

가. 본 항목의 대상정보는 특정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신고·요청에 의해 행하는 조성, 육성,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조언에 관한 정보이다. 지도·조언의 지침, 요령은 공개하지만 개별의 신고·요청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다만, 사업자단체를 통해 통일적으로 행하는 지도사항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도·감독에 관한 정보

●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나 다음은 비공개 가능

- 지도·감독을 위한 조사 등에 의해 수집한 정보로서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혹은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
-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또는 공개함으로써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적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정보

해 설

가. 사업자 등이 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의 여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당한지 등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시를 행하거나 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어 일정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정보를 이 항목의 대상으로 한다.

나. 지도·감독은 권한 및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행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출입검사 등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배경으로 행하는 행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기관의 임무, 권한 또는 소관 사무규정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 '사업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사업자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감독, 제휴협력 활동을 말한다.

라. 사업자의 경영·활동·설비, 물건의 제조·판매·사용 등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의 사무운영의 지침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기본방침은 공개 할 수 있다.

마. 지도·감독에 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해당 단체의 적정한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또한 법령 등에 권고, 지시 등에 따르지 않는 때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된 경우 공개로 인해 공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1. 인·허가에 관한 정보

□ 신청 절차, 심사 기준에 관한 정보

● 인·허가·신고 등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 심사 기준은 공개,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인·허가 등의 신청 절차, 심사 기준에 관한 문서는 국민이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 기준의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인·허가 사무의 목적이 훼손되는 등 심사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개개의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등

● 개개의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한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인·허가대장, 업자·보유자 등록부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나 다음은 비공개 가능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중에게 위험하고 특히 신중하고 엄정한 취급을 요하는 물건(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취급 또는 그 관련설비·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공사업 또는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생산 노하우,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로 인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나. 허가 등을 요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특수법인 등의 사무·사업에 관한 신청서·첨부서류 중에는 계산내역이나 용지취득 등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해당 사무·사업(공공사업,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2.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①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결과 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③공공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누계)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및 그것에 근거한 협정서 등 계산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이나,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 가능

-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추측할 수 있는 계산단가 등 공개로 인해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별 사업장소 또는 보상내용이 명확한 정보, 용지취득 계획, 교섭방침 등 용지 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조사연구 결과 또는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해당 또는 장래의 동종 사업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관계자의 의견 조사서 등 공개로 인해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공공사업에는 하천, 도로, 사방, 항만, 간척 등의 공공적 토목공사 외에 청사,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행하여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비공개의 판단에는 본 항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나. 공공사업에는 국민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고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자본의 정비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조사결과 보고서, 사업실적, 공공용지 취득면적·손실보상액 등은 공개 할 수 있다. 또한 건축공사 계산요령 등 계산의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이나 계산 기준은 적정한 견적이나 기준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공개 할 수 있다.

다. ⅰ), ⅱ)에는 예정가격이 추측될 수 있는 계산단가, 개별 사업개소 또는 보상내용, 용지취득의 교섭방침 등이 있는데 당해 사업 또는 계속·반복하여 실시하는 동종 사업의 계약사무,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ⅲ)의 '사업계획의 수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자유로운 검토,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 국민에 오해를 주는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적정한 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장래에 동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수립사무에 관한 공개로 인해 상기와 같이 현저한 지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후에도 공개로 인해 사업계획의 실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마. ⅳ)의 '관계자의 의견조사'는 교섭사무나 계획수립사무에 있어서 중요한 검토·판단 자료가 되는 것이다. 개개의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의해 조사에 대한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13. 융자 및 보조금에 관한 정보

□ 융자에 관한 정보

● 국가가 스스로 행한 융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계 정보의 기준을 준용한다.

해 설

융자에 관한 정보란 국가가 행하는 융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융자관계 정보는 대부에 관한 정보와 상환에 관한 정보로 대별되지만, 이들에 대한 공개·비공개의 판단은 보조금 관계 정보에 있어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보조금에 관한 정보

● 보조금 교부 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등 보조금에 관한 정보는 공개

해 설

보조금이란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으로 보조금 교부사무와 보조사업의 적정 집행이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보조금이 갖는 공적성격을 고려해 볼 때 보조금 관계 정보는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금 교부 지침, 보조사업 실시 지침' 등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 개개의 신청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그 외의 보조금 집행절차에 관한 정보 및 교부신청 전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보조사업의 구체적 지정(명시), 보조사업비의 계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다음은 비공개 가능

-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 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의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교부신청서나 교부결정 통지서 등 개개의 보조금 교부신청·결정에 관한 정보나 사업완료서 등 개개 보조사업의 진행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협의·조정,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나 당해 보조사업에 있어서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장래의 동종 사무에 대해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있다.

나.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계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4. 지급 및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정보

□ 지급(금전, 현물)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사업, 원호사업, 학교교육사업 등에 있어서 금전 지급, 현물 지급에 관한 사업의 개요, 지급 절차·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 등은 공개대상

해 설

'지급'이란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개개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계된 사안이며, 사업의 개요, 지급 절차·요건, 사업에 관한 지도, 지급액 및 지급상황, 재정부담상황 등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급의 인정에 관계된 판정·평가 방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로 인해 부정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개의 신청서, 인정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시설의 관리운영(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 학교교육·사회교육·의료·사회복지사업 등을 행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①정비의 방침, 계획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 ②소장품, 전시실 등의 시설의 설비·비품에 관한 정보 ③운영방침, 연수·훈련프로그램, 수험절차, 이용안내, 입소규칙 등 시설의 운영방법에 관한 정보 ④학생수, 입관자 수, 입원자 수, 수업료 등 시설의 이용상황에 관한 정보 ⑤교육, 연수, 치료, 생활지도, 훈련 등에 관한 기록 등 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이나 다음은 비공개 가능

- 대학 등에 있어서 교육 또는 연구의 목적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설에 있어서 교육활동 또는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해 설

가. 공공시설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서비스를 일반인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므로 정비계획, 설비·비품, 운영방법, 이용상황, 운영실태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학 등의 교육 또는 연구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는 공개로 인해 시설 등에 대한 예단을 할 수 있거나 불신감의 초래, 학생과의 신뢰관계의 손상 및 학생에 대해 불안감이나 동요를 주는 경우, 시설에 있어서 교육목적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라. 진료활동에 관한 정보와 관련,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해당 병원의 사망률, 치료에 관한 기록 등 공개로 인해 환자에게 예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치료·회복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5. 대외관계에 관한 정보

- ① 조약, 협정, 결의 등 국제간의 합의문서, ② 그 외의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 (회의·회담에 관한 것, 경제협력에 관한 것, 자국민 보호에 관한 것, 조약·협정에 관한 것, 국제정세에 관한 것,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것 등)로써 공개하는 경우 국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자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 외교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가능

16. 통계조사 등에 관한 정보

□ 통계조사 결과, 관측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

- 통계조사의 결과 및 전문적 조사기관이 행한 자연현상의 관측, 국토·수로의 측량 등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법령에 의해 공개의무가 면제되는 지정 통계조사의 결과 또는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한 시험조사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통계수치, 계측수치,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수치를 대상으로 한다.

나. 통계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가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노출시키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통계조사의 결과 중에서 통계조사의 기획을 위해 시험조사, 법령에 의한 공개의무를 면제하는 지정 통계조사의 결과에 등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업무통계에 관한 정보

- 사무수행에 관련하여 집계된 검사·조사·처분의 건수, 인허가 등 건수, 위반 단속건수 등의 행정활동의 실적 및 대상업자·시설 수, 화재·사고의 발생 수 등의 행정대상 지표는 공개가 원칙
- 공개로 인해 검사, 조사, 단속 등의 목적, 효과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대상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행정활동에 관한 지표수치인 업무통계, 사무수행에 대하여 집계된 행정활동 실적을 나타내는 데이터나 행정대상 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분류·정리가 매우 상세한 경우에는 공개로 인해 검사·조사 또는 거래의 방법이나 위법행위의 양태·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 경우 검사 등의 목적 및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행정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7. 고충·진정에 관한 정보

□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

-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 진정 등의 처리규정 등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해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고충·진정관계 정보에는 진정서, 업계단체의 제안 등도 포함된다. 고충상담, 진정 등은 기본적으로는 신청인과 수리행정기관 등 관계자간의 문제이며, 신청인도 당사자 간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고충, 진정의 정보는 당사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고충, 진정 등의 수리절차, 수리행정기관 내부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규정한 정보 중에서 판단, 처리의 방침·방법에 관한 정보, 처리방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적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개별 고충·진정 등에 관한 정보

- 고충서, 진정서 등의 문서, 처리표, 알선(주선)서, 의견조회서, 조사서 등의 개별사업 처리에 관한 정보 또는 사안에 대한 답변서로서 공개함에 따라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개별 사안의 내용을 기술한 정보, 처리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정보이다. '신청인 등 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이 판단한다. 해당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공개·비공개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8. 불복신청, 소송에 관한 정보

□ 소송에 관한 정보

- 소송에 관한 통계 및 개별의 판례·재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개별 재판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향후 소송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련되어 수집된 자료 등 소송 사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향후 소송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소송에 관한 통계자료, 조사·연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지만 개별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향후의 소송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나. 국가를 일방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다. 소송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거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 소송 계류 중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된 경우, 공개로 인해 국가에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종료 후에도 장래 동종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송의 당사자로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등 소송사무의 진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정보

● 절차에 관한 정보

- 행정기관에 의한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사무절차규정 등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처리, 심리의 방법에 관한 정보로 공개로 인해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개별 알선·조정·중재 및 약식쟁송에 관한 정보

- 개별 행정심판 신청서, 심리기록 및 재결서는 공개
- 심리과정이 비공개인 정보 또는 공개로 인해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행정심판 이외의 개별 약식쟁송 및 알선·조정·중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사안처리,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해 설

가. 본 항목에서는 공공기관 및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공개여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나. 알선 · 조정 · 중재 및 약식쟁송에 대해서는 절차를 규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과의 교섭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처리, 심리의 절차에 관한 정보는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공해분쟁의 재정(裁定), 부당 근로행위의 심판, 공정거래법상의 심판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심리가 준사법적인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심리기록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보관하는 소송기록에 준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비밀, 사업자의 비밀보호의 필요에 의하여 심리과정이 비공개되는 경우 또는 공개로 인해 심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관에 의한 알선 · 조정 · 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 기관은 분쟁해결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Ⅵ.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인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 위원장 : 총괄부서장
- 위　원 : 2급(을) 이상 직원 3명과 외부전문가 3명, 위원장이 임명
- 간　사 :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 위원의 임기

- 내부위원 : 1년
- 외부위원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 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심의 예외대상**

-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ㄸ、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제3자가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심의회의 의결**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공개·부분·비공개 결정을 문서로 통지
- 심의회가 아니라 기관장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에는 결정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Ⅶ. 사전 정보공개

1.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법 제7조)

□ 공표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정보 선정 시 유의 사항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공표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지출증빙서류와 같이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 공표의 주기·시기

-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기별 홈페이지에 공개

-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예) ○○계획을 ○월에 공개

- 생산 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 공표 방법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 정보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
  ⇒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
-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인 사안으로서의 성격이 큰 정보
  ⇒ 사전정보공표 대상
-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경미·행정 내부 사항
  ⇒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

* 게시위치 :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정보공개/공표 - 사전정보공표

2. 정보목록의 사전 공개

●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정보공개법 제8조 제1항)

□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법제8조제1항)

*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도 포함

□ 정보목록 구성 항목

● 단위업무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 업무명

* 단위 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 제목도 가능 (예, 처리과서무, 처리과예산회계 등)

●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여부 : 정보를 생산할 당시 설정한 공개여부

☐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 대상 정보도 포함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게시위치 :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정보공개/공표 - 정보목록

[별 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Ⅰ. 운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Ⅱ.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징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를 원칙, 비공개는 예외로 운영
-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로 열거된 정보는 비밀정보는 아니며 공공기관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공공기관은 공익의 필요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있음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때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공공기관이 하며, 그러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제9조 제1항 각호까지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를 기재

Ⅲ. 비공개 기준

□ 법 제9조 제1항에서 비밀·보안사항, 개인정보, 재판 진행 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다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법 제9조 제2항)

Ⅳ.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 Ⅱ,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비공지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실질비)

☐ 비공개 유형

1.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2.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단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
4.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5.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6.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24조)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8.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으로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 147 판결)

2.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청구권에 대하여 비공개를 정당화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1998. 9. 25)

3. 민원문서 및 처리회신문서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화한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례 (1998. 12. 28)

4. 법률의 위임 없이 열람·등사에 대하여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물론 이를 거부하는 행정지침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2003. 12. 16.)

5.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은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부산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누 2362 판결)

6. 국가정보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및 예산내역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 위 해당사항은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소재지·정원)와 제12조(예산)에 의하여"법률"로 명백하게 비공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7.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누설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를 명문으로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비공개되어야 함

법 제9조 제1항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비공개 유형

1.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및 회의록 등
2.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 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4.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취약점 등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및 공사경영정보 및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6. 전시 자동차 동원관련 정보
7. 전시 건설기계 동원관련 정보
8. 임진강 남북 공동 수해방지 협력, 남북 접경지역 공유하천(임진강·북한강) 개발 등 북한사업 추진관련 정보
9.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국외개발사업 추진관련 정보
10. 군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관련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문서의 공개에 의하여 초래될 외교관계상의 국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없음(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 5114 판결)

2. 누설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이 실제 군사기밀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이 군사 기밀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군사기밀에 해당함.(대법원 2001. 1. 28 선고 99도 4022 판결)

3. 국가기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로서 국가의 안정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함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 204등(병합) 결정)

법 제9조 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비공개 유형

1. 댐, 수도 등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타당성조사 관련 문서
2. 범죄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사항
3. 공사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위·변조 등)의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법집행 문제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신원확인 가능한 정보 등
   ⇒ 비공개
   (Luther v. LRS, No. 5-86-130, Slip op. at 6 (D. Minn. Aug. 13, 1987)

2. 형사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보원 및 비밀수사원의 신원 ⇒ 비공개
   (McQueem v. U.S., 264 F.Supp. 2d 502, 521 (S.D. Tex. 2003)

3. 침수예상 지도(inundation maps)의 공개로 인하여 테러리스트들의 댐에 대한 공격 위함을 증가시켜 하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예상되는 경우 ⇒ 비공개
   (Living Rivers, Inc. v. U.S. Bureau of Reclamation, 245F. Supp. 2d 1313, 1321-1322(D, Utah 2003)

4.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정보 ⇒ 비공개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청구서와 접수대장,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소집공문, 결정문, 회의록, 결과보고서, 결과통지서, 통보서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 보안유공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되어야 함

5.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 공개

-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6. 경비용역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 사항에 따라 부분공개
(K-water 정보공개심의회, 2013.2.13.)

- 경비구역, 근무형태 등 경비용역의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 과업지시서를 제외한 계약내역 및 시방서 등 일반 사항은 본 조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

법 제9조 제1항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전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 비공개 유형

1. 판결 전 재판 기록에 관한 정보
2.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4.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2. 11)

2.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 공개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 구 3692 판결)

3. 정보원이나 정보수집기법과 관련된 정보가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비공개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 구 147 판결)

4.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 공개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 구 3692 판결)

법 제9조 제1항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1. 감사에 관한사항
   -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현지조치사항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사항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2.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 입찰예정가격에 관한 정보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납세증명서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등
◦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직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건강상담표 등
◦ 인사평정, 징계, 상훈 등 관련 심사·회의록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각종 사업추진, 제도개선 등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 등 공개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 공개로 인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5. 평가·진단·승인·심사·시험 등에 관한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6.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직원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 사례(행정심판, 판결례, 외국 사례 등)

1. 의사결정과정 내지 심의과정에서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때, 또는 대외적 공표가 있기 전”까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됨(대법원 2000. 5. 30 선고)

2.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 이외의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답안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3. 3. 14 선고)

3.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대법원 2002 두 12946)

4.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03. 8. 22. 선고2002두12946 판결)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

5.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 공개 여부
(대구지법 2006구합820 ⇒ 비공개(5호, 6호)

* 회의록 내용 중 자유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나아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자유토론 부분까지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은 자신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위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법 제9조 제1항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 비공개 유형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및 양심, 종교 및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2.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 개인생활에 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3.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다만, 설계심의위원회 명단 등 다른 법령에 의거 공개하도록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직원에 관한 정보
- 특정 직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서, 출근부의 직원성명 등)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6.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결격사유조회,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7. 수도 및 댐용수 공급, 용지보상 및 분양,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유공자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8. 각종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9.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감찰, 감사, 민원 등에 관하여 알게 된 개인 사항과 성희롱예방 및 상담 등과 관련한 개인 사항
10.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11. 개인의 토지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
12. 감사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 정보
13. 사보, 인터넷「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거나「이벤트」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사항
14. 기관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1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인적사항은 물론 재산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가 됨 (대법원 2003. 12.11)

2.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 됨 (대법원 1997. 5.23)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일상경비정리부, 현금출납부, 기타 유사한 서류와 위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담당공무원 작성의 보고서 등의 지출증빙서류 등에 포함된 개인(공무원 제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 2001두 6428판결)

4.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판결) ⇒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5.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서울고법 2002. 8. 27. 선고 2001누17274 판결) ⇒ 비공개

-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법 제9조 제1항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의 영리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비공개 유형

1.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등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전적으로 내부관리를 위한 문서
   - 시설관리 또는 사무의 진행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업무일지, 내부회의 개최기록, 하부기관과의 연락문서 등)
   - 소모품 구입, 내부회의 개최, 여비교통비, 광열비 등 일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취득·유지·역무의 조달과 관련된 회계처리 문서
5. 공공사업에 관한 문서
   - 개별 사업장소, 보상내용이 명확한 것, 용지취득계획, 교섭방침 등 용

지취득경비의 불합리한 증대와 교섭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에 동종사업의 교섭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조사연구결과 또는 다른 기관, 지자체 등의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동종사업계획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계획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 관계자의 의견조사결과로서 공개함으로써 조사에의 협력을 얻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

6. 연구에 관한 문서

-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중간단계의 연구성과 등 발표 전에 충분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서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00.1.7)

2.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은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해야 하는 사항 (서울행정법원 2006. 1. 5)

3.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 등의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 공개
-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조성원가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비공개로 인해 공사 등에게 인정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해 보면 공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4.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공개 여부
(수원지법 2005구합 5292) ⇒ 비공개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서류의 경우, 그 일부에는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한 위 사업지구 보상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로 서는 향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법 제9조 제1항제8호	**부동산투자·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를 하도록 함

☐ 비공개 유형

1. 수도, 수자원, 단지 등 소관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투자심사 심의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 법규에 근거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판결례

1. 지정이 끝난 상태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0233) ⇒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의 발생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승인·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행법 2007. 10. 9.선고 2007구합6342) ⇒ 공개

- 완성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분양가격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책정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수수료 기준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 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공개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 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 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table>
<tr><td colspan="3">접수번호</td><td colspan="3">접수일</td></tr>
<tr><td rowspan="3">제3자</td><td rowspan="2">성명</td><td rowspan="2"></td><td rowspan="3">연락처</td><td>전화번호</td></tr>
<tr><td>모사전송번호</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전자우편주소</td></tr>
<tr><td rowspan="2">청구인</td><td>성명</td><td colspan="3"></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정보내용</td><td colspan="3"></td></tr>
</table>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 정보공개 허용	[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3자의견 청취서

<table>
<tr><td colspan="3">접수번호</td><td colspan="3">접수일</td></tr>
<tr><td rowspan="2">청구인</td><td colspan="5">성명</td></tr>
<tr><td colspan="5">주소</td></tr>
<tr><td>정보내용</td><td colspan="5"></td></tr>
<tr><td>의견청취일시</td><td colspan="5"></td></tr>
<tr><td>의견청취내용</td><td colspan="5"></td></tr>
<tr><td>그 밖의
참고사항</td><td colspan="5"></td></tr>
<tr><td>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td><td colspan="2">직급</td><td>성명</td><td colspan="2">서명 또는 인</td></tr>
<tr><td rowspan="8">구술자(제3자)</td><td rowspan="4">기관인
경우</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 rowspan="4">서명 또는 인</td></tr>
<tr><td>직급</td><td colspan="2"></td></tr>
<tr><td>담당자
성명</td><td colspan="2"></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일반인인
경우</td><td>성명</td><td colspan="2"></td><td rowspan="4">서명 또는 인</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able>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또는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로도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위 유의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인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 등 명칭):	
	주소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공개청구 내용		
공개결정 내용		
공개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